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2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김용만・민병덕・이훈기

이인영 • 이수진 • 한민수

박상혁 · 임광현 · 신영대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 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,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,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 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·연구·개발 및 관련 교육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,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5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064호)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063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. 한국보훈정책연구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원은 이 법 시행 당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의 권리·의무 및 재산 중 보훈교육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으로 승계한다.
 - ② 연구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(보훈교육연구원에 관 한 사항에 한정한다)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